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대구지역, 1차)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3,149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 일반, 탄소,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 ' 23.3.15(수) ~ 4.4(화) 18:00까지

-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플랫폼 오류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2차모집)**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ESG 경영혁신 바우처,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는 6월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별첨5]**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일반 바우처

- (지원규모) 예산 1,589백만원(일반 1,289, 융복합 300)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

*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대구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으로 확인)

** 동일 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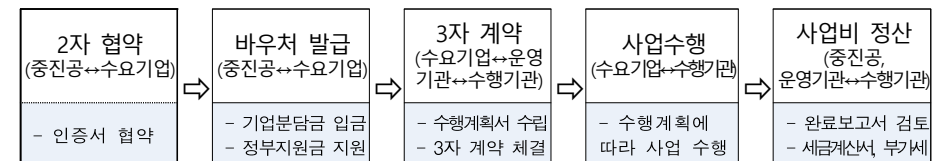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5개)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20
기술 지원 (4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향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 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산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제품 시험 및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 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⑧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⑨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⑩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협업 기업 선정 확인서	공통우대 가점 사항*** (총 5개 중 신청서류가 필요한 항목은 2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은 첨부 1, 2 작성 및 제출

***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협업승인 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19년, '20년, '21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⑨, ⑩) 중점지원대상 및 공통우대 해당 기업은 서면심사 시 가점

구분	지원대상
중점지원대상 (최대5점)	(주력산업) 전기·자율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별첨5]
공통우대* (최대 5점)	❶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❸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❹ 협업기업 선정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 ❺ 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 공통우대가점 항목별 적용 범위

- ❶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 석유정제,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금속 제조업
- ❷ 규제샌드박스 최초 취득시, 중기부 혹은 산업부에서 발급되는 실증특례확인서로, 서류미보유시 최초발급 정부 부처에 재발급요청 필요
- ❸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지역 : 대전 대덕구 평촌공업지역, 경북 영천시 도남농공단지 일원, 충남 천안시 백석농공단지, 대구 침산동 공업지역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규모) 예산 959백만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 | | |
|---------------------|---------------------------|
| ① 1차 금속 제조업 | ⑥ 음료 제조업 |
|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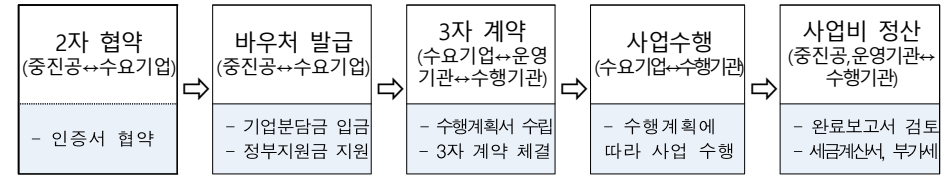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필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 심층컨설팅 :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등	50
기술 지원 (선택)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 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2]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 개인 ('19년, '20년, '21년) 제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 등 평가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3.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53-659-2292)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6-8433)

* [별첨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별첨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서식

【서식 1】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2. 대표자 경력

대 표 자	학 력	졸업연월	학 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종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포상 및 상훈				

3. 주요 거래처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매출처	국내					개월	일
						개월	일
						개월	일
	해외					개월	일
						개월	일

4. 주주현황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의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중점지원업종과의 연관성

기업의 주력 생산품 및 업종이 사업 공고문의 중점지원업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 적으로 작성, 기업의 주 생산품, 산업분류코드 등을 기재하여 설명
※ 중점지원업종은 서면평가 가점 사항으로 허위 기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5-2.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참여이력 보유 기업)

참여연도		매출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참여 서비스 (프로그램)		고용창출 효과 (단위 : 명)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수 기재
주요 성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추진한 협약과제 이행 결과와 이를 통한 경영 개선 이행수준, 개선 성과, 추가적인 사업화 등 주요성과 및 환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참여이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작성(필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6-2.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6-3.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4.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5.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매출 증가액	(천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천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 (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구 분	신 청 분 야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보조금은 각 분야별 50%~90%, 기업분담금은 각 분야별 10%~50%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
억원 이하(90%), 3억원 ~ 10억원(80%), 10억원 ~ 50억원(70%), 50억원 ~ 120억원(5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50,000천원

8. 추진일정

신청분야	'23년												'24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명	참여년월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서식 2】 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융복합컨설팅) 협업계획서

□ 협업체 기본정보

구분		기업명	대표자	설립연도	매출액(천원)**	생산품
협업체 구성	주관기업*					
	참여기업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기업 대상 실시)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19년, '20년, '21년) 제출)

□ 협업 추진체계

기업명	역할분담	협업비중(%)	융합 공동기술개발(제품) 설명	
	예)생산		제품사진	상세설명
	예)마케팅			
	예)디자인			

□ 공동협력방안

구 분	협 력 방 안				
제품개발 및 개선					
생산					
사업화					
협력모델	비즈니스모델	☐ B to B		☐ B to C	☐ B to G
	판로대상	국내			
		국외			

별첨2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사업 신청 서식

【서식 3】사업 계획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년 월	주요내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2. 대표자 경력

대표자	학력	졸업연월	학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종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포상 및 상훈				

3. 주요 거래처

구분	업체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매출처	국내					개월	일
						개월	일
						개월	일
	해외					개월	일

4. 주주현황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장상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고탄소배출업종과의 연관성

기업의 주력 생산품 및 업종이 사업 공고문의 고탄소배출업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 기업의 주 생산품, 산업분류코드 등을 기재하여 설명
※ 허위 기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6-2.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

6-3.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4.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5.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매출 증가액	(천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천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 (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구 분	신청 분야		
	컨설팅	기술지원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 원	천 원	천 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 원	천 원	천 원

- * 탄소중립 바우처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90% 보조율 적용
-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50,000천원

8. 추진일정

신청분야	‘23년											‘24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컨설팅																	
기술지원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명	참여년월

10. 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서식 4】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사업계획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탄소중립 계획서 [별지]

□ 사업장 에너지사용 현황

<사용연료 종류>

체크	연료 종류	비중(%)	체크	연료 종류	비중(%)
☐	전기		☐	LNG	
☐	LPG (취사용)		☐	스팀	
☐	경유(차량용 제외)		☐	차량용 경유 및 휘발유	
☐	기타(직접 기재) :				

<연간 에너지사용량>

연도별	연료 (Nm3)	스팀 (ton)	전력 (kWh)	기타
2021년				
2022년				

* 월별 고지서 합산 기준 연간 연료(LNG, 스팀, 전기 등) 사용량 기입

□ 에너지관리 현황 및 절감활동

구 분	내 용
에너지관리 현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관리 방법을 기재 (고지서 수합 및 보관/ 고지서 데이터 전산화(excel 등 활용)/ 연간 사용량 관리 분석/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도입 현황	최근 5년 이내 에너지 개선을 위한 고효율 설비 및 기술 도입 현황
에너지절감 활동	과거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에너지절감 활동 혹은 노력을 기재 향후 에너지절감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을 시 기재
탄소중립 준비현황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준비현황 및 자체 전략 수립 여부 등 관련 내용 기재
기대효과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용 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정도 등 기재

별첨3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6. 담배 제조업	C12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하다.

별첨4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9년 ~ '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19년.1.1 이전 설립 기업	- '19년, '20년, '21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19년 설립	- '20, '21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0년 설립	- '21년 매출액
'21.1월~'21.11월 설립	- '21년 매출액을 '21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1.12월 설립	- '21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2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2년 표준재무제표 발급 전)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18.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1.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1.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첨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진공 소재지 및 관할구역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재지

지방청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방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6361
부산지방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051-601-5141
대구경북지방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참단로 122-11	053-659-2292
광주전남지방청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062-360-9143
경기지방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201-6973
인천지방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032-450-1174
대전세종지방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43
충남지방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9층	041-415-0631
울산지방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052-210-0050
강원지방청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0-1632
충북지방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230-5346
전북지방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52
경남지방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268-255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05호	02-2106-7454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02-2023-4318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02-769-6414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32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3층	032-560-2377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74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031-760-9007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031-783-0624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봉단원희캐슬 4층 431-434호	031-899-9113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51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42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033-649-9373
충청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46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트시티 201-206호	044-860-8307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48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903-9356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변영대로 200 2층	043-841-3614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5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빌딩 4층	063-460-9812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61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통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061-280-8035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평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77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4층	053-606-8433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054-440-5912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본부동 112호	054-288-7343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봉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4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A동 1층	051-630-7402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벅산e-센텀클래스원 201호	051-745-5923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052-703-113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55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1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3층	055-751-290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64-754-5157

□ 관할구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서울	서울	금천구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	서초구 ,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북부	중구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	인천	연수구 ,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인천서부	서구 ,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경기	수원시 ,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	성남시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	안산시 ,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	화성시 ,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북부	고양시 ,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대전세종	대전	대전시	
	세종	세종시	
충남	충남	천안시 ,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북	충북	청주시 ,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	충주시 ,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음성군
강원	강원	춘천시 ,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영동	강릉시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전북	전북	전주시 ,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북서부	군산시 , 고창군, 부안군	익산시
광주· 전남	광주	광주시 ,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전남	무안군 ,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	순천시 ,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장흥군
	제주	제주시 , 서귀포시	
대구· 경북	대구	대구시	고령군
	경북	구미시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고령군	고령군
	경북동부	포항시 ,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	경산시 , 영천시, 청도군	
울산	울산	울산시	
부산	부산	사상구 , 사하구, 강서구, 서구, 중구, 영도구, 북구, 부산진구, 동구	
	부산동부	해운대구 ,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경남	경남	창원시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	김해시 ,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	진주시 ,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중진공 지역본부 소재 구역

별첨6

대구광역시 지역주력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구 분	주요 내용	
정 의	모빌리티의 공통핵심부품인 구동전장부품과 결합된 모듈을 생산 제조하는 산업으로 자율주행 등 기기의 인식·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SW를 포함	
분류번호	27212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부품 전기장치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해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부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부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부품 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 기계요소 소재부품

구 분	주 요 내 용	
정 의	전방산업(수송기기, 로봇 등)의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공소재 및 1차 단위부품으로 기계·금속가공소재와 고강도 유·무기계 하이브리드 소재부품	
분류번호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3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디지털 의료기기

구 분	주 요 내 용	
정 의	질병 예방 및 수요자 맞춤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제품설계에서 제조단계에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전기·전자·재료·광학 등 기술이 융합되는 의료기기와 치료·의학적 처치(시술 및 수술)와 개인 헬스케어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 용품을 포함	
분류번호	27191	치과용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27213	물질검사, 측정및분석기구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